

선	기관의 장
람	



제50호(호외) 2022. 12. 30(금)

조 례

광양시 조례 제1967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1
광양시 조례 제1968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광양시 조례 제1969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광양시 조례 제1970호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26
광양시 조례 제1971호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31
광양시 조례 제1972호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광양시 조례 제1973호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45
광양시 조례 제1974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	56
광양시 조례 제1975호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8
광양시 조례 제1976호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광양시 조례 제1977호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광양시 조례 제1978호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광양시 조례 제1979호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88
광양시 조례 제1980호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광양시 조례 제1981호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광양시 조례 제1982호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규칙

광양시 규칙 제907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18

회 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
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7호

붙 임 :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광양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광양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 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지방위원회에

서 따로 정한다.

④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광양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양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광양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광양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광양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광양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

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지방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지방위원회에 지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수당) 시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
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8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분증 발급 및 패용) 공무원의 신분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제7항제4호 중 “네 번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를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장기재직휴가는 <u>네 번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u> ⑧ ~ ⑪ (생략)	<u>제9조의2(신분증 발급 및 패용)</u> <u>공무원의 신분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u> 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u>-----. ⑧ ~ ⑪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행
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9호

붙 임 :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양읍 초남리 구역(행정리)란 중 “초남”을 “초남(종래 초남리 97-37, 97-38은 황금동에 편입하여 제외)”로, 덕례리 구역(행정리)란 중 “수시아 아파트”를 “수시아 아파트, 흥한에르가 아파트,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로, 같은 읍 소계란 중 “68”을 “70”으로 하고, 옥곡면 신금리 구역(행정리)란 중 “덕진 광양의 봄 2”를 “덕진 광양의 봄 2, 펠리시아 아파트”로, 같은 면 소계란 중 “21”을 “22”로 하며, 골약동 성황동 구역(행정리)란 중 “18통 일원”을 “18통~22통 일원”으로, 같은 동 소계란 중 “18”을 “22”로 하고, 중마동 마동 구역(행정리)란 중 “61통 일원”을 “61통~66통 일원”으로, 같은 동 소계란 중 “61”을 “66”으로 하며, 금호동 구역(행정리)란 중 “1통~18통 일원”을 “1통~19통 일원”으로, 같은 동 소계란 중 “18”을 “19”로 하고, 읍면동 합계란 중 “334”를 “347”로 한다.

별표 2의 광양읍 초남2리 3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	리	반	관 할 구 역
광양읍	초남2리	1	샘골 일원
		2	큰동네 일원
		3	독종골, 선창 일원 (종래 초남리 97-37, 97-38은 황금동에 편입하여 제외)

별표 2의 광양읍 덕례10리란 다음에 덕례11리란부터 덕례12리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읍 소계란 중 “68”을 “70”으로, “324”를 “336”으로 한다.

읍면	리	반	관 할 구 역
광양읍	덕례11리	1	덕례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1동
		2	덕례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2동
		3	덕례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3동
		4	덕례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4동
		5	덕례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5동
		6	덕례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6동
	덕례12리	1	덕례리 산55-48번지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1동
		2	덕례리 산55-48번지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2동
		3	덕례리 산55-48번지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3동
		4	덕례리 산55-48번지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4동
		5	덕례리 산55-48번지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5동
		6	덕례리 산55-48번지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6동

별표 2의 옥곡면 신금 7리란 다음에 신금 8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면 소계란 중 “21”을 “22”로, “45”를 “48”로 하며, 읍면합계란 중 “205”를 “208”로, “527”을 “542”로 한다.

읍면	리	반	관 할 구 역
옥곡면	신금 8리	1	신금리 454번지 펠리시아 아파트 101동
		2	신금리 454번지 펠리시아 아파트 102동
		3	신금리 454번지 펠리시아 아파트 103동

별표 3의 골약동 18통란 다음에 19통란부터 22통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동 소계란 중 “18”을 “22”로, “27”을 “48”로 한다.

동	통	반	관 할 구 역
골약동	19통	1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1동
		2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2동
		3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3동
		4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4동
		5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5동
		6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6동
	20통	1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7동
		2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8동
		3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9동
		4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10동
		5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11동
		6	성황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12동
	21통	1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1동
		2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2동
		3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3동
		4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4동
		5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5동
	22통	1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6동
		2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7동
		3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8동
		4	성황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9동

별표 3의 중마동 61통란 다음에 62통란부터 66통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동 소계란 중 “61”을 “66”으로, “301”을 “328”로 한다.

동	통	반	관 할 구 역
중마동	62통	1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와우지구) 101동
		2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와우지구) 102동
		3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와우지구) 103동
	63통	1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와우지구) 104동
		2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와우지구) 105동
	64통	1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1동
		2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2동
		3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3동
		4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4동
		5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5동
		6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6동
		7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7동
		8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8동
	65통	1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9동
		2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0동
		3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1동
		4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2동
		5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3동
		6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4동
		7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5동
	66통	1	마동 818번지 광양 영무예다음 아파트 101동
		2	마동 818번지 광양 영무예다음 아파트 102동
		3	마동 818번지 광양 영무예다음 아파트 103동
		4	마동 818번지 광양 영무예다음 아파트 104동
		5	마동 818번지 광양 영무예다음 아파트 105동
		6	마동 818번지 광양 영무예다음 아파트 106동
		7	마동 818번지 광양 영무예다음 아파트 107동

별표 3의 금호동 18통란 다음에 19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동 소계란 중 “18”을 “19”로, “271”을 “273”으로 하며, 동 합계란 중 “129”를 “139”로, “723”을 “773”으로 한다.

동	통	반	관 할 구 역
금호동	19	1	희망길 12-7 기가타운 A동
		2	희망길 12-7 기가타운 B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읍·면·동별 이·동의 명칭 및 구역			[별표 1] 읍·면·동별 이·동의 명칭 및 구역		
읍면동	법정리동	구 역(행정리)	읍면동	법정리동	구 역(행정리)
광양읍	우산라·익산리	(생략)	광양읍	우산라·세풍리	(현행과 같음)
	초남리	현월, 초남		초남리	---, 초남(종래 초남리 97-37, 97-38은 황금동에 편입하여 제외)
	사곡라·세풍리	(생략)		사곡라·세풍리	(현행과 같음)
	덕려리	화암, 무선, 예구1, 예구2, 덕산, 동주, 오성아파트, 대림아파트1, 대림아파트2, 수시아아파트		덕려리	-----수시아아파트, 흥한에르가아파트,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아파트
소계		68	소계		70
봉강면·옥룡면		(생략)	봉강면·옥룡면		(현행과 같음)
옥곡면	원월라·묵배리	(생략)	옥곡면	원월라·묵배리	(현행과 같음)
	신금리	신기, 금촌, 신금, 약암, 명주, 덕진 광양의 봄1, 덕진 광양의 봄2		신금리	-----덕진 광양의 봄2, 팔사아아파트
	장동라·수평리	(생략)		장동라·수평리	(현행과 같음)
소계		21	소계		22
진상면·다압면		(생략)	진상면·다압면		(현행과 같음)
골약동	황금동·도이동	(생략)	골약동	황금동·도이동	(현행과 같음)
	성향동	골약동 9통, 12~15통, 18통 일원		성향동	-----18통~22통 일원
	중군동	(생략)		중군동	(현행과 같음)
소계		18	소계		22
중마동	중동	(생략)	중마동	중동	(현행과 같음)
	마동	중마동 11통~12통, 28통~29통, 41통~44통 일원, 48통~49통, 53통 일원, 55통~57통, 61통 일원		마동	-----61통~66통 일원
소계		61	소계		66
광영동·태인동		(생략)	광영동·태인동		(현행과 같음)
금호동	금호동	금호동 1통~18통 일원	금호동	금호동	-----1통~19통 일원
소계		18	소계		19
합계		334	합계		347

현행				개정안			
[별표 2] 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2] 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	리	반	관할구역	읍면	리	반	관할구역
광양읍	우산 ¹ 라초남 ¹ 리	(생략)		광양읍	우산 ¹ 라초남 ¹ 리	(현행과 같음)	
	초남 ² 리	1	(생략)		초남 ² 리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독종골, 선창일원			3	독종골, 선창 일원 (종래 초남리 97-37, 97-38은 향금동에 편입하여 제외)
	익산 ¹ 라덕 ¹ 레 ¹ 리	(생략)			익산 ¹ 라덕 ¹ 레 ¹ 리	(현행과 같음)	
	신 ¹ 살	신 ¹ 살	신 ¹ 살		덕 ¹ 레 ¹ 리	1	덕레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1동
						2	덕레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2동
						3	덕레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3동
						4	덕레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4동
						5	덕레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5동
						6	덕레리 1844번지 흥한에르가 아파트 106동
	신 ¹ 살	신 ¹ 살	신 ¹ 살		덕 ¹ 레 ¹ 리	1	덕레리 산55-48번지 덕진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1동
						2	덕레리 산55-48번지 덕진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2동
						3	덕레리 산55-48번지 덕진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3동
						4	덕레리 산55-48번지 덕진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4동
						5	덕레리 산55-48번지 덕진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5동
						6	덕레리 산55-48번지 덕진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 106동
소계	68	324		소계	70	336	
봉강면~옥룡면	(생략)		봉강면~옥룡면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2] 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2] 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	리	반	관할구역	읍면	리	반	관할구역
옥곡면	원월1리~ 신금7리		(생략)	옥곡면	원월1리~ 신금7리		(현행과 같음)
					신금8리	1	신금리 454번지 펠리시아 아파트 101동
	신살	신살	신살			2	신금리 454번지 펠리시아 아파트 102동
						3	신금리 454번지 펠리시아 아파트 103동
	장동1리~ 수평리		(생략)		장동1리~ 수평리		(현행과 같음)
소계	21	45		소계	22	48	
진상면~다 압면			(생략)	진상면~다 압면			(현행과 같음)
합계	205	527		합계	208	542	

현행				개정안			
[별표 3]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3]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통	반	관할구역	동	통	반	관할구역
골약동	1~18	(생략)		골약동	1~18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19	1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1동
						2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2동
						3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3동
						4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4동
						5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5동
						6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6동
	<신설>	<신설>	<신설>		20	1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7동
						2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8동
						3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09동
4				성항수동로 22번지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10동			
<신설>	<신설>	<신설>	21	1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1동		
				2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2동		
				3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3동		
				4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4동		
				5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5동		
<신설>	<신설>	<신설>	22	1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6동		
				2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7동		
				3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8동		
				4	성항수동로 21번지 광양 센트럴자이 아파트 109동		
소계	18	27		소계	22	48	

현행				개정안			
[별표 3]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3]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통	반	관할구역	동	통	반	관할구역
중마동	161		(생략)	중마동	161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62	1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 101동
						2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 101동
						3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 101동
	<신설>	<신설>	<신설>		63	1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 101동
						2	마동 180-1번지 LH행복주택 101동
	<신설>	<신설>	<신설>		64	1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1동
						2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2동
						3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3동
						4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4동
	<신설>	<신설>	<신설>			5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5동
						6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6동
						7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7동
						8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8동
					65	1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09동
	<신설>	<신설>	<신설>			2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0동
						3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1동
						4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2동
						5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3동
						6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4동
	<신설>	<신설>	<신설>			7	마동 1309번지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115동
					66	1	마동 818번지 영무예다움 아파트 101동
						2	마동 818번지 영무예다움 아파트 102동
						3	마동 818번지 영무예다움 아파트 103동
						4	마동 818번지 영무예다움 아파트 104동
	<신설>	<신설>	<신설>			5	마동 818번지 영무예다움 아파트 105동
						6	마동 818번지 영무예다움 아파트 106동
						7	마동 818번지 영무예다움 아파트 107동
쇼계	61	301		쇼계	66	328	

현행				개정안			
[별표 3]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3]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통	반	관할구역	동	통	반	관할구역
광영동 ~태인동	(생략)			광영동 ~태인동	(현행과 같음)		
금호동	1~18	(생략)		금호동	1~18	(현행과 같음)	
	<u>신살</u>	<u>신살</u>	<u>신살</u>		19	1	<u>희망길 12-7 가가타운 A동</u>
						2	<u>희망길 12-7 가가타운 B동</u>
소계	<u>18</u>	<u>271</u>		소계	<u>19</u>	<u>273</u>	
합계	<u>129</u>	<u>723</u>		합계	<u>139</u>	<u>773</u>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
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0호

붙 임 :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원활한 시정 업무수행을 위해 광양시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광양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및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광양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양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9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집주소		연락처	
운전자 관 련 사 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생년월일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사고 내용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사고 피해 내용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 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신·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1호

붙 임 :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정에너지 보급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지 보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방향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및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광양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인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사업
자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시범·실증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급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무원
3.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준용) 제8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위
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2호

붙 임 :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광양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서식의 위기가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① 시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위기가구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월소득	건강상태	동거여부
	가구주						
주거실태	☐ 자가(만원) ☐ 전세(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 기타()						
	구체적인 주거상황						
소득	원 ()						
일반재산	원 ()						
금융재산	원 ()						
조사자의견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및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이용 개인정보	1)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 신청인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3) 수급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 - 주거,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 보유 및 이용기간	1) 이용기간 : 해당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2) 보유기간 : 해당서비스가 종료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전산시스템에서의 삭제 등의 방법에 따라 파기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및 제한사항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원활한 상담 및 관련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복지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민감 정보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_____ (인)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자
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3호

붙 임 :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

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의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7조(회의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8조(센터의 설치) 시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에는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필요인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④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장의 선임·임기) ①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공

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항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소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관·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소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임기 등)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자원봉사단체 대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

원봉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

제17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시민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2. 체육시설과 여성문화센터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제21조(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보험 가입 등)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센터에 지원하고, 소장은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자증” 소지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0% 감면

②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8.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
사자증” 소지자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노인
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4호

붙 임 :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소방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5호

붙임 :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관내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사람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가구주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 그 밖에 광양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 시설과 물품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 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2조제2호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해야 한다.

1. 추진 목적과 방향
2.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수요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와 절차
4. 소요 예산
5. 사업 홍보계획
6. 그 밖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9조(예산 확보)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주는 그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지원 중에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6호

붙임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5,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4,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3,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50매당)	3,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 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 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1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을 더한 금액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0만원을 더한 금액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장당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0천원	13천원
다) 21장 이상	17천원	장당	장당
	장당	22천원	28천원
	25천원	장당	장당
		32천원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 1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 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 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 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⑦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제7항----- ----- ----- ----- -----제7 항----- -----.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개정 2018. 3. >		[별표 3] <개정 2022. .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		가. 벽면 이용 간판	
1) 일반 벽면이용 간판(2)를 제외한 경우)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5㎡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000원	- 면적 5㎡ 초과시	1,000원
1㎡마다 더하는 금액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30,000원	- 면적 5㎡ 이하	30,000원
- 면적 6㎡ 초과시	2,000원	- 면적 5㎡ 초과시	2,000원
1㎡마다 더하는 금액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5,000원	- 면적 5㎡ 이하	15,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	1,000원	- 면적 5㎡ 초과시	1,000원
m마다 더하는 금액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류·악기·악기표지등	4,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류·악기·악기표지등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이용 간판 1)과 같음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 면적 10㎡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5,000원	- 면적 10㎡ 초과시	5,000원
1㎡마다 더하는 금액		1㎡마다 더하는 금액	
마. 지주 이용 간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 면적 10㎡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2,000원	- 면적 10㎡ 초과시	2,000원
1㎡마다 더하는 금액		1㎡마다 더하는 금액	
바. 애드벌룬		바. 애드벌룬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생 략)	(생 략)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생 략)	(생 략)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생 략)	(생 략)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생 략)	(생 략)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4,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생 략)	(생 략)	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파. 현수막		파. 현수막	
1)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7,000원	- 10㎡ 이하	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3) 가로등 현수기(1개소) 3,000원		3) 가로등 현수기(1개소)	3,000원
〈신 설〉		4) 지정게시대 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생 략)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거. (생 략)	(생 략)	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너. (생 략)	(생 략)	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더. 광고물등에 내온류 또는 전 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내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더. 내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접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자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 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8 . 3.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자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별표 4] <개정 2022 .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현행과 같음)	
- 지면에 설치하는 것	(현행과 같음)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사. 현수막 게시시설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14,000원 800원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사. 현수막 게시시설 아. 그밖의 광고물등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자주 이용 간판에 준함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14,000원 800원
<신 설>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점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개정 2012.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개정 2022 .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개정 2021. 12. 31.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3만원
- 0.5㎡ 이하		22만원
- 0.6㎡ 이상 0.8㎡ 이하		32만원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42만원
- 1.0㎡ 이상 1.3㎡ 이하		50만원
- 1.4㎡ 이상 1.6㎡ 이하		64만원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75만원
- 2.0㎡ 이상 2.3㎡ 이하		100만원
- 2.4㎡ 이상 2.6㎡ 이하		129만원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8만원
- 0.5㎡ 이하		12만원
- 0.6㎡ 이상 0.8㎡ 이하		14만원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25만원
- 1.0㎡ 이상 1.3㎡ 이하		33만원
- 1.4㎡ 이상 1.6㎡ 이하		49만원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58만원
- 2.0㎡ 이상 2.3㎡ 이하		67만원
- 2.4㎡ 이상 2.6㎡ 이하		79만원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8만원
- 1.0㎡ 이하		12만원
- 1.1㎡ 이상 2.0㎡ 이하		14만원
- 2.1㎡ 이상 3.0㎡ 미만		

[별표 6] <개정 2022 . >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2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1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 15만원 을 더한 금액	+ 20만원 을 더한 금액	+ 25만원 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500만원			5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9만원
가. 1회 위반한 경우		45만원			49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99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7호

붙 임 :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u> ----- ----- -----.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③ (생략)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u>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 ----- ----- ----- ----- <u>노력</u> <u>하여야 한다.</u>
<신 설>	⑤ <u>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u>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8호

붙임 :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을 “등록장애인(부모 또는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마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중마 장난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마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중동로 108(중동)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회비의 감면)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3. 4. (생략) 5.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 라. (생략)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바. (생략) 6. (생략)	제10조(회비의 감면) ----- ----- ----- -----. 1.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 --등록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3. 4. (현행과 같음) 5.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바.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별표 1] 광양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제2항 관련) <table><tr><th>명칭</th><th>소재지</th><th>비고</th></tr><tr><td>종마 장난감도서관</td><td>광양시 시청로 6(중동) 광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3층</td><td></td></tr><tr><td>희망 장난감도서관</td><td>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td><td></td></tr><tr><td>용강 장난감도서관</td><td>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td><td></td></tr></table>	명칭	소재지	비고	종마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시청로 6(중동) 광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3층		희망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		용강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		[별표 1] 광양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제2항 관련) <table><tr><th>명칭</th><th>소재지</th><th>비고</th></tr><tr><td>종마 장난감도서관</td><td>광양시 중동로 108(중동)</td><td></td></tr><tr><td>희망 장난감도서관</td><td>-----</td><td></td></tr><tr><td>용강 장난감도서관</td><td>-----</td><td></td></tr></table>	명칭	소재지	비고	종마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중동로 108(중동)		희망 장난감도서관	-----		용강 장난감도서관	-----	
명칭	소재지	비고																							
종마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시청로 6(중동) 광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3층																								
희망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																								
용강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																								
명칭	소재지	비고																							
종마 장난감도서관	광양시 중동로 108(중동)																								
희망 장난감도서관	-----																								
용강 장난감도서관	-----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79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회의”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 원칙) 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 도모한다.

③ 의장은 의정 홍보를 추진할 때에는 지역사회 통합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계획 수립) 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정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정 홍보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획보도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정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과 배포
2.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과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4.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와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과 배포
7. 의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

제6조(홍보매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 소통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복지, 문화, 관광, 환경, 안전, 교통, 교육, 생활정보 등 시민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의정소식지 발행) ① 광양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소식지의 발행 부수와 배부처 지정,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정뉴스 제작) ① 의회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회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제13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과 제작,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공모전·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소셜미디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0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항 제4호 중 “장기재직휴가는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를 “장기재직휴가는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재직휴가는 <u>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u>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 <u>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 -----.
⑧ ~ ⑪ (생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1호

붙임 :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33조”를 “ 「지방자치법」 제40조”로, “의한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에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속공무원”을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19년에는 월 2,145,8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을 “2023년에는 월 2,265,8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소속공무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5(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별표 6(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으로 한다.

제9조 중 “시공무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u>조례</u> 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u>의한</u> <u>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u>에 대하여</u>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0조 ----- ----- 따라 <u>광양시의회 의원에게</u> ----- ----- ----- -----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u>의원의</u>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u>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속공무원의</u>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u>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 -----. ②----- <u>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u> ----- -----.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u>2019년에는 월 2,145,8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u> ②월정수당은 <u>시 소속공무원의</u>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 <u>2023년에는 월 2,265,8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u> ----- ----- -----. ②----- <u>의회 소속 공무원</u> -----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u>별표5(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u> , <u>별표6(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u>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 ----- ----- ----- <u>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u> ----- ----- ----- -----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u>시공무원의 예</u> 에 따른다.	제9조(준용) ----- ----- ----- <u>의회 소속 공무원</u> ----- -----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82호

붙임 :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중 “의회”를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 또
는 시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
체”로,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
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시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직무 관련자”란 광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다. 그 밖에 <u>광양시의회의 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u>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u>	<u><삭제></u>
① <u>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 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양시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및</u>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
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
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 관
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본회의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삭 제>

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

<삭 제>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시 집행기관 및 시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삭 제>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

<삭 제>

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생략)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1. (현행과 같음)
2. -----

----- 전가(轉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전가(轉嫁)하거나 -----

가. 시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 관련자,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삭 제>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 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07호

붙임 :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